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6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김현정·박홍배·이기헌

부승찬 • 전재수 • 손명수

이개호 · 정태호 · 김기표

강준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채무자회생법")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,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,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결격사유로 '파산선고를 받은 경우'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,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3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8조(임원의 해임) 금융위원회	제18조(임원의 해임)		
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	
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	<u><삭 제></u>	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	